



가톨릭관동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을 위한 지침서

---

가톨릭관동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 목 차

---

- |          |                            |              |
|----------|----------------------------|--------------|
| <b>1</b> | <b>교수 · 학습 지원의 근거 및 개괄</b> | ..... 3~4p   |
| <b>2</b> | <b>교수 · 학습 지원 공통사항</b>     | ..... 5~9p   |
| <b>3</b> | <b>장애유형별 이해 및 지원</b>       | ..... 10~17p |

# 1

## 교수·학습 지원의 근거 및 개괄

### □ 학교의 장애학생 지원 의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장 제30조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완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물적·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저촉됩니다.

첫째,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둘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

셋째,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넷째,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다섯째,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여섯째,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학습지원 개괄

가. 학교는 장애학생 지원의 의무를 지닙니다.

- 입학을 허가한 이상, 학교(교수 및 직원)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장애학생의 효율적 수업 참여를 위한 수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장애학생이 수강을 할 경우,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장애학생들은 여느 학생들과 같은 시간·장소에서 강의 자료와 정보 등을 획득하고 지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자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당 장애학생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이외의 대체 형태의 자료(강의 노트, 강의 PPT파일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텍스트 파일 제공 시 장애학생이 텍스트 파일을 수업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받아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라. 성실한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장애학생들은 강의 수강에 있어서 자신의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자와 개별적으로 만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학생이 수강 과정에서 장애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갖고 성실히 대해주시고,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정보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마. 학생의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장애와 관련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의 노출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항은 신중히 보호해야하고 장애와 관련된 상담 또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바.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 장애마다 또는 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그 기능적 제한의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므로 장애학생들의 개인별 지원 요구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교수방법 또는 개인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 학습 결과에 대해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교수학습을 수행합니다.

- 장애학생들이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이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과 같은 수준에서 학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학습능력이나 학칙의 이행 등에 있어서 별도의 척도를 두거나 다른 기준으로 장애학생들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 장애학생의 의지를 존중하되 학생의 독립성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합니다.

-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장애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이 보여도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받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해주도록 합니다.

자. 장애학생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보완 또는 대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학생이나 뇌성마비 학생들은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필답고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음성인식 프로그램 내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필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뇌성마비학생에게는 시험 보는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차.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유관 행정부서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 장애학생에 대한 행정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장애학생 관련 사항은 관계 부서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고, 다른 부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강의계획서 장애학생 지원사항 명시

: 장애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교규정 및 과목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사항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이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 장애학생들에 대한 구체적 필요조치는 '장애학생'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특성 등 개별적 특성에 대한 개별적 확인과정을 통해 실현해야 합니다.

cf) 아래 사항은 강의 계획서 내 '장애학생 지원사항' 예시입니다.

## 가. 공통사항

1. 좌석 배치에 대한 우선권
2. 파워포인트 파일 제공

## 나. 시각장애 학생 지원

1.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장애대학생 도우미 등을 통한 시험 대필 인정
2. 시험시간 연장(1.5배)
3. 과제 제출기한 연장
4. 시각적 매체를 활용한 과제가 있을 시 다른 과제로 대체
5. 교수 강의 녹음 허용
6. 별도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지원 제공

## 다. 청각장애 학생 지원

1. 강의 대필을 위한 도우미 학생 청강 허용
2. 마이크 사용
3. 청각적 매체를 활용한 과제가 있을 시 다른 과제로 대체
4. 구술시험 시 다른 방법으로 시험 대체
5. 별도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지원 제공

## 라. 지체·뇌병변장애 학생 지원

1. 파워포인트 파일 제공
2. 좌석 배치에 대한 우선권
3. 시험시간 연장(1.5~2배)
4. 견학이나 체험과 같은 과제 시 이동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대체 과제 제시
5. 별도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지원 제공

## 마. 지적·자폐장애 학생 지원

1. 면담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능력에 맞는 과제 난이도 조정
2. 강의 보조를 위한 도우미 학생 청강 허용
3. 별도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지원 제공

## □ 동등한 교육 보장

: 교수는 장애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시간·장소에서 교수가 제시하는 강의 자료와 정보들을 흡수하고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당 장애학생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이외의 대체 형태의 자료(강의노트, 강의 PPT파일 등)들도 장애학생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 성실한 상담지도

: 장애학생들은 강의 수강에 있어서 자신의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와 개별적으로 만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학업, 진로, 생활, 인간관계, 개인적인 고민 등 학교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애학생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취합니다. 만약 장애학생이 수강과정에서 장애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학교구정과 과목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되, 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 개인 신상 비밀보장

: 장애학생들은 특히 개인적 신상에 대한 비밀의 노출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신중히 보호해야 하며 장애와 관련된 상담 또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당 학생의 장애를 언급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 장애유형별로 또는 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그 기능적 제한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장애특성 이외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필요요구가 다릅니다. 따라서 적절한 교수방법 또한 개인의 상이한 특성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 동일한 기대

가. 장애학생들이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수업상황 안에서 만큼은 동료 학생들과 같은 수준에서 학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학습능력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다른 기준으로 장애학생들을 보려하면 안됩니다.

나. 협력학습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장애학생들에게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과제수행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참여 가능한 과제를 제시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장애학생들 역시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하기에, 부당행위에 대해 예외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강의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학생으로서 비윤리적인 행위 시에는 타 학생들과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학생 개인의 의지 존중

: 굳이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장애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이 보여도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받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 □ 강의 준비

- 가. 장애학생들이 같은 강의실에서 다른 방법의 학습 지원을 받는데 대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 나. 강의, 실험실습, 발표, 견학 기회는 물론 과제부여, 시험 등 모든 학습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기회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단, 장애특성 상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의 목적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다. 장애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동, 접근, 학습자료 획득의 곤란과 같은 장애로 인해 부딪힐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 라. 학생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문헌의 목록과 교육 자료들을 미리 제공합니다.
- 마. 강의를 계획할 때는 장애학생들의 학습편의를 고려한 컴퓨터 파일 자료 제작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 바. 학기 시작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강의와 실험실습 방법, 과제작성 및 제출 방법, 시험의 출제 방법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걱정을 덜어줍니다.
- 사. 사전에 장애학생들과 효과적인 학습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의논합니다.

## □ 과제제출의 조정

- 가. 장애학생에 대해 과제의 무조건적인 면제보다는 장애로 인하여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인 경우에만 면담을 통해 대안과제를 제시합니다.
- 나. 과제를 제시하는 교수자는 직접 장애학생과 상담을 실시하여 과제 수행전략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 공동과제나 조별과제를 제시하는 경우 비장애학생들의 편견으로 장애학생이 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후 과제를 제시합니다.
- 라. 과제의 면제보다 장애로 인하여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인 경우 면담을 통해 대안과제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과제를 제시하는 교수나 강사는 직접 장애학생과 상담을 실시하여 과제 수행전략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학생이 과제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장애학생도우미를 배정하여 자료검색, 문헌 수집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마. 장애학생을 위해서 과제의 내용, 수행전략,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 과제 지침서를 장애학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갑자기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 장애학생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꼭 필요할 때 제출기한을 연장 해주어야 합니다.
- 사. 장애학생들의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과제의 형태, 내용, 제출기한을 융통성 있게 조절합니다.

1. 영화, 미술관 관람에 대한 과제의 경우, 관련 도서를 읽거나 자료 수집으로 대체
2. 과제를 반드시 문서 형태가 아닌 음성 녹음,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 허용
3. 과제물 제출 기한에 대한 여유시간 제공
4. 시각장애학생은 도표나 수식을 중심으로 작성해야하는 과제 보다 서술식·논술식으로 작성하는 과제 부여
5. 과제의 내용, 수행전략,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 과제 지침서를 장애학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제시

## □ 과제 사전 예고제도

- 가. 과제 사전 예고제도는 강의계획서의 작성과정에서부터 미리 의도된 과제를 계획적으로 제시하며 과제의 내용, 수행전략,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을 상세히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 나. 이 제도는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것으로 대학의 교수자는 책무를 지니고 과제를 사전에 충실히 예고해야 합니다.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갑자기 과제를 제시해야하는 경우 장애학생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출기한을 연장해 주는 '장애학생 과제 제출기한 연장제도'를 시행합니다.

## □ 과제 제출 연장제도

- 가. 장애학생 과제 제출기한 연장제도는 사전 예고된 과제 외에 강의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갑자기 과제를 제시해야 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나. 이 제도는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곤란으로 과제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과 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장애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합니다.

## □ 평가지원

- 가. 시각·뇌병변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라 혹은 중증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학생들은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필답고사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시각 1-2급의 장애학생은 목자형태의 질문인지와 답변서술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공간에서 보조인의 낭독 및 대필이나 음성인식 프로그램 내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육의 경직과 요동으로 답안서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뇌병변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과목 특성별로 시험시간을 1.5배 이상 연장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청각 및 언어장애학생의 경우는 듣기 및 말하기 수행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대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나. 학습에 곤란을 겪는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의 적용으로 우대를 받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해 사회적 편견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습능력의 문제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거나 대체하여 성적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사유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다. 가능한 한 공정한 성적 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험지 작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평가로 대체하거나 노트북 등 기타 보조공학을 사용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적산출에서 무조건적인 우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해 성적평정에서 불리한 평정을 받는 것 외에 좀 더 쉬운 기준의 적용으로 우대를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학생들은 성적평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장애학생에 대해 편견을 심화시키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평가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장애학생을 우대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 평가수정 대안평가 제도

가. 장애학생 평가수정 및 대안평가 제도는 언어능력 부족, 시각·청각의 결함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에게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수정·보완하거나 다른 내용과 방법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나. 이 제도는 장애로 인해 장애학생이 받을 수 있는 평가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합니다.

다. 대학은 답안작성이 곤란한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방법을 수정하여 필답고사 대신 구술평가로 대체하거나, 필답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비율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시각장애

구 분	내 용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li> <li>•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li> <li>•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li> <li>•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li> </ul>
학습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학생들은 대학 수업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강의나 토론 내용을 듣는 데에 문제가 없지만, 강의계획서나 교재, 파워포인트 자료, 칠판, 지도, 비디오, 시험지, 시연, 도서관 자료, 사진 등의 수많은 시각적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li> <li>• 장애수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전혀 볼 수 없는 반면, 어떤 학생들은 큰 사물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확대된 인쇄물을 볼 수 있으며, 어떤 학생들은 점자를 사용하는 반면 점자를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장애학생들이 가진 각자의 요구와 시력에 따라 다양한 편의와 기자재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동시에, 교수자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학습적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li> </ul>	
학습환경	<p>시각장애학생은 점자도서 또는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독서확대기를 통하여 학습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도서는 점자물로 출판된 도서로 일반도서의 약 4배 정도 두꺼워집니다. 점자정보단말기의 보편화로 인하여 사용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li> <li>•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컴퓨터로 한글문서나 txt, 인터넷, ms오피스 등을 실행하고 점자나 음성지원으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전자기기입니다. 활용도가 대단히 높지만 높은 가격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조공학기기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대여하여 사용합니다. 이 기기로 교재를 접하기 위해서는 DAISY, txt, hwp 등 전자문서로 변환된 파일이 필요하며, 중증 시각장애(1-2급) 학생들이 주로 사용합니다.</li> <li>• 독서확대기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하여 일반 교재를 즉시 확대하여 볼 수 있는 기기입니다. 경증 시각장애 학생들이 주로 사용합니다.</li> </ul>	
좌석배치	듣기에 의존하므로 본인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실 안내	교수는 시각장애 학생에게 계단이나 가구, 강의 지점, 낮은 벽걸이 또는 다른 여러 물건들의 위치 확인과 같은 실내의 물리적 배치에 관해 안내가 필요한지 물어보아야 하며, 요구할 경우 알려주어야 합니다.	

언어사용	“이것을 보십시오”, “저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와 같은 말은 피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칠판에 쓴 글들을 소리 내어 읽어주어야 합니다.
실험실습 지원	실험실습과정에서 보조자나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학생이 보조자를 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강의교재 지원	수업자료로 쓰이는 교재, PPT, 핸드아웃 등은 시각장애학생이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의자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사전에 공지·제공하여 점자나 소리, 텍스트파일로 학생이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의노트 지원	모든 강의 노트와 읽기자료를 학과 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확대복사, 음성변환, 점자출력 등으로 다시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개별과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감상문 제출과 같은 과제는 시각적인 사항을 요하는 과제이므로 유사한 도서자료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과제에 대하여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li> <li>• 실기과제가 있는 수업의 경우 시각의 제한으로 인해서 수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제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어야 합니다.</li> <li>• 시각장애학생은 시각적 자료를 보는데 일반학생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등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과제 제출기한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li> <li>• 과제 제출방법을 인쇄물에 한정하지 않고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도 허용하도록 합니다.</li> <li>• 도표나 수식을 중심으로 작성해야하는 과제보다 서술식이나 논술식으로 작성하는 과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li> <li>• 전공의 특성상 도표, 수식 과제를 수행해야하는 경우나 요청하는 경우 과제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학생도우미를 허용하도록 합니다.</li> </ul>
조별과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과제 수행 시 팀 내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역할 부여를 미리 제공해주고, 장애로 인한 정보검색 및 자료제작의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학생도우미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li> <li>• 읽기의 어려움에 따라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해야하는 과제의 경우 장애학생도우미를 배치하거나 해당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녹음자료 혹은 동영상 자료로 제작하여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li> </ul>
발표 지원	PPT 프로그램으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컴퓨터를 조작하여 발표를 수행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표자료 제작하는 것을 도우미 학생이 보조해주거나, PPT 프로그램 이외에 한글이나 워드 등 시각장애학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학생의 요구에 맞게 시험지를 점자자료나 확대자료,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노트북이나 점자정보단말기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li> <li>• 시험시간을 일반학생보다 대략 1.5~2배로 연장해주도록하고, 별도의 독립된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li> <li>•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지를 읽을 수 없는 경우 대독자를 지원하도록 합니다.</li> </ul>

□ 청각장애

구 분	내 용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청취가 어려운 사람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li> <li>•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li> <li>•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li> <li>•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li> </ul>
학습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를 청취할 수 없을 때에는 수화통역이나 자막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성 정보가 상당량을 차지하는 일상의 대학 강의는 청각장애학생으로 하여금 결국 전공의 선택 및 교육과정 이수 자체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대학교의 강의를 녹화하여 전달받고, 강의내용을 바로 텍스트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기에 청각장애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li> <li>• 청각장애는 난청에서부터 전혀 듣지 못하기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청력손실 정도는 유형청력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아동의 연령·지능·가정과 지역사회의 특성·교육적 경험에 따라 그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이 곤란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정서적 경험의 기회가 제한되어 이런 점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li> <li>• 의사소통을 할 때 시각에 의존합니다. 시각 중심의 의사소통(몸짓, 동작, 표정)은 청각적인 의사소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긴 하지만, 교수자는 청각 장애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하게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li> <li>• 모두가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잔존 청각을 주로 활용하고, 어떤 학생들은 구화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생들은 말로서는 거의 또는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의 읽지 못하는 입술 읽기를 통해 말을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몸짓이나 필담도 있겠지만, 수화나 지화 역시 이들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 학생들은 건청인들과 의사소통을 한 경험이 많아 그들에게 먼저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이 무엇인지 물어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li> </ul>	
좌석배치	강의실 앞쪽에 지정석을 마련해 줌으로써 가능한 한 시각 및 청각 단서를 최대한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소통	<p>강의를 할 때 학생들과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은 표정이나 입술을 통해 여러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수의 얼굴과 입은 강의시간 내내 똑똑히 보이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등 뒤에 빛이 드는 창으로 인한 역광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껌을 씹거나 연필을 무는 등 입술을 가릴 수 있는 다른 방해물들을 피해야 합니다.</p> <p>강의중에는 쉬운 말을 쓰고 단문 형태의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며, 복잡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의 중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그 개념을 설명하고 미리 강의 자료에 제시하도록 합니다.</p>	

전공용어 제시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전공 관련 용어들을 선정하여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여 학과 사이트에 올리거나,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강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강의 시 자막이 있는 비디오와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막이 곤란하다면 요점이나 요약내용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토의식 강의	학생에게 강의에 대해 의견을 밝히도록 하거나 학생이 질문을 할 때 교수는 대답에 앞서 그 학생의 질문을 다시 한 번 반복함으로써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한 다음, 그 의무의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대답 해주어야 합니다.
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와 자료의 텍스트 파일을 제공하는 외에 강의자의 강의노트를 파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목 수강생들 모두에게 강의 노트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li> <li>• 도우미학생이 강의자의 말을 노트북으로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청강 및 타이핑을 허용합니다.</li> <li>• 청각장애 학생이 요청하는 노트북, 녹음기, 모바일 단말기 등을 허용합니다.</li> </ul>
발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화가 불가능한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발표를 할 때 학생이 수화를 하거나 문자를 노트북에 입력하면 옆에서 수화통역사나 도우미학생이 내용을 읽어주면서 발표하는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화가 불가능한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발표과제를 서면과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li> <li>• 구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청각장애 학생이 발표를 할 때에는 학생의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오라고 요청해서 미리 학생들에게 배포해주는 것이 도움 됩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이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미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li> </ul>
조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역할 부여를 미리 제공해주도록 합니다.</li> <li>• 구화가 불가능한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는 발표 시 학생이 수화를 하거나 문자를 노트북에 입력하면 옆에서 수화통역사나 도우미학생이 내용을 읽어주면서 조별과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li> </ul>
개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 보고서, 영화감상문 제출 등과 같이 청각적인 정보 수집을 요하는 과제인 경우에는 유사한 읽기 자료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대체과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li> <li>• 실기과제가 있는 수업의 경우 청각의 제한으로 인해서 수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제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어야 합니다.</li> </ul>
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듣기평가와 같이 청각적 정보가 시험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듣기를 대체해줄 수 있는 문제나 기타 대체적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li> <li>• 문제풀이 요령이나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 용어 등에 대해 언어능력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화 시험 시 수화로 문제를 제시하거나 객관식 문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li> </ul>

□ 지체·뇌병변장애

구 분	내 용		
정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능·형태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li> <li>•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li>•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li> <li>•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li> <li>• 지체에 위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li> </ul>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학습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강의 접근권, 상지(팔, 손)기능 장애로 인한 보고서 및 답안지 작성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마우스 및 키보드 조작 등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의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과 같은 학습활동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학생 자신의 능력과 태도에 상관없이 무능력하다거나 불성실하다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이중적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장애유형과 정도가 너무 다양하여 인지능력이나 학업성취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적 능력에만 결함이 있는 지체장애 학생들은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인지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수술과 입원을 할 경우 학습동기가 저하되고, 사회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보이므로 교사와 가족,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li> <li>• 이동에 장애를 가지는 경우 보통 뇌성마비, 다발성 경화증, 진행성 근이영양증 또는 척수 손상과 같은 장애가 그 원인을 이룹니다. 이런 학생들은 목발이나 보조기, 휠체어 등을 사용하거나, 드문 경우이긴 하나 간호인을 대동하여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척수에 손상을 입은 학생들은 부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다릅니다. 기능적 한계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강의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그런 지원이 전혀 필요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li> </ul>
학습자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을 쓸 수 없는 학생들은 노트 필기가 어려우므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도우미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타이핑 또는 강의 녹음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li> <li>손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수업 중 노트필기, 과제물 수행, 시험응시, 페이지 넘김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업 중 발생하는 학습 반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학생에게 여유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li> <li>교재나 자료의 텍스트 파일을 제공하고, 미리 강의노트를 파일로 제공하여 학생이 메모는 하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li> <li>상지의 손상으로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재를 볼 수 있도록 강의시작 전 관련 자료를 스캔하여 PDF파일 등으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li> <li>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위치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합니다.</li> </ul>
출결의 어려움	장애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은 건물 구조상의 장애나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그날의 기상 등으로 강의에 지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교수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출결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리배정	휠체어 등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동의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의 공간을 배치해 주어야 합니다.
실험실습 지원	신체적인 도움을 주는 도우미학생과 짝을 지어주거나, 교수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별과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역할 부여를 미리 제공해주도록 합니다.</li> <li>견학이나 체험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함께 제공하며, 필요시 이동도우미를 동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li> <li>발성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조별과제를 수행할 때 문자를 노트북에 입력하면 옆에서 도우미학생이 내용을 읽어주면서 조별과제를 준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li> </ul>
개별과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학이나 체험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함께 제공하며, 필요시 이동도우미를 동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li> <li>일반적인 보고서 작성과제의 경우 도서관 이용 등의 자료수집에의 곤란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li> </ul>
발표 지원	발성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청각장애 학생처럼 학생이 문자를 노트북에 입력하면 옆에서 도우미학생이 내용을 읽어주면서 발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발표과제를 서면 과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필자가 답안을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합니다.</li> <li>장애로 인해 컴퓨터로 답안 입력하는 것이 수월한 경우 학생의 요구에 맞게 시험지를 디지털 파일로 제공하고 노트북 사용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li> <li>시험시간을 일반학생보다 1.5~2배로 연장해주도록 하고, 별도의 독립된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li> <li>체력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학생은 체력상태에 따라 평가시간 중에도 탄력적으로 휴식을 허용하도록 합니다.</li> <li>필기와 구술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객관식 문제를 제공합니다.</li> </ul>

□ 지적장애

구 분	내 용		
정의		정신지체	지적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신지체로 명명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로 명명함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학습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장애학생과 똑같은 생리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가집니다. 그러나 주의력에 많은 결함을 보이는데,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자극들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에도 결함을 보이는데 장기기억은 비장애 또래들과 비슷하나 단기 기억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입니다. 누적된 학습 실패의 경험으로 학습동기가 낮으며, 학습의 전이와 일반화가 어려우며 언어발달 속도가 비장애학생에 비해 지체됩니다. 그러나 정신이상과 같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발달이 가능한 교육적 대상으로 인지하여 학습을 지도해주셔야 합니다.</li> <li>•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나아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므로 준비과정으로서의 특수교육 혹은 훈련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차이' 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li> <li>• 학습준비 및 수행을 위한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수행과정과 성취도에 있어 비장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과목특성과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학생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교과과정을 선택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과목을 수강할 경우 교수는 장애학생이 수업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체크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센터와 협의하여 학습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li> <li>• 돌발적 이상행동이 확인되는 경우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상행동으로 보이는 것들이 악의적 혹은 비정상적 행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확인이 사후조치에 선행되어야 합니다.</li> </ul>		
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구술평가로 대체하거나, 논술형 시험을 학생이 표현 가능한 수준의 요약형으로 작성하도록 평가 조정하여야 합니다.</li> <li>•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하는 지필고사 방법에 한정하지 말고,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구술로 답변하면 대필자가 작성해주는 방안과 같이 다양한 평가방법을 허용합니다.</li> </ul>		
발표 지원	<p>많은 학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오라고 요청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배포해주도록 하고, 발표할 때 필요시에는 장애학생도우미가 발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발표과제를 서면과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p>		
기타사항	<p>타 장애유형에 비하여 고등교육지원 연구 및 안내 자료가 적습니다. 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정신장애

구 분	내 용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장애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이로부터 나타나는 심리행동 특성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으로부터 명확한 의학적 판정내용을 확인하고 특성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i> <li>일반적으로 우울장애 등 정신장애학생은 학업집중도가 매우 낮고, 장기간 학업 몰입 역시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효과에 따른 긴 수면과 무기력감 등으로 추가적 학업 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학생 개인의 불성실성에 기인한 학업태도만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한 학업 결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li> <li>증상발현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과정 중 중요한 수업이나 시험 등에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적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발생 후 장기화 될 경우 방치하지 말고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한 상황파악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센터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li> </ul>
기타사항	타 장애유형에 비하여 고등교육지원 연구 및 안내 자료가 적습니다.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장애(신장, 심장, 호흡기장애, 혈우병, 간질 등)

구 분	내 용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외 치료시간에 대한 배려는 물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석 등 자체적 의료행위에 대한 필요사항을 지원합니다.</li> <li>과목특성에 비추어(교양체육 등) 장애학생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li> <li>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건강악화 상황에 대해 학기 초 그 가능성과 특성에 대해 장애학생으로부터 미리 확인하고, 긴급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둡니다.</li> </ul>
기타사항	타 장애유형에 비하여 고등교육지원 연구 및 안내 자료가 적습니다.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가톨릭관동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창조관110호, 033-649-7571)